

#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 안 일 : 2012. 11. 27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” 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  
으로 함(안 제4조의2)

나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2명” 을 삭제함(안 제5조제3항제3호)

다.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 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 으로 함  
(안 제5조제4항)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5조(기금운영 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(이하010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. 단,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기금운영 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</u> -----</p> <p>② ----- 1명을 포함한 10명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----- 위촉 ----- ----- 하되, 한차례만 -----</p>	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-----</p> <p>제5조(기금운영 심의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마포구의회 의원2명</u></p> <p>4. <u>기타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 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</u></p> <p>④ <u>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2명</u></p> <p>4. <u>그 밖에 -----</u> ----- -----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위촉 -----</u> ----- ----- <u>전임위원의 남은 기간</u> ----- -----</p> <p>⑤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1.·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</u> ----- -----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